

의안번호	2214807
의 퇴 인	전현희의원
회 답 일	2025.12.17.
추 계 번호	25D66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8억 2,900만원, 2030년 8억 8,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억 4,300만원(연평균 8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829	826	844	861	883	4,243	849

주: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등 대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비(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를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대법원에 사무국을 둠(제1항) 대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관리관 또는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관·전산이사관으로 보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관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둠(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1. 선임대법관 2. <u>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u> 3. <u>헌법재판소 사무처장</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함) 9.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9조(사법행정위원회)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둔(제1항)	의무규정
	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2항)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 2.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9.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생략)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1명	의무규정
	안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함(제1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함(제2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함(제3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함(제4항)	의무규정
	안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함(제1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며(제1항),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처장비서관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제2항)	의무규정
	안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81조의13(감찰관의 설치 및 임명 등)	대법원에 감찰관을 두고(제1항), 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미대상)	現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사무국 소속 인력과 행정관리실 소속 일부 인력을 대법원 사무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 (미대상)	현행 예산 범위(각종회의 운영비 등)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4	안 제19조(사법행정위원회)	○	-
	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안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안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5	안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 (미대상)	現 법원행정처 차장(판사이거나 차관급 보수 수준) 이하 직원을 사법행정위원회가 승계하게 되므로,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는 現 법원행정처 예산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안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6	안 제81조의13(감찰관의 설치 및 임명 등)	- (미대상)	윤리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안 제41조의2)와 사법행정위원회(안 제19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7조의6)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가재정소요는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41조의2¹⁾에서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위원정수

- 13명, 내부위원 4명(순증 1명), 외부위원 9명(순증 2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現 대법관의 임기,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회의횟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2] 추천위원회 구성횟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회)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임기만료 대법관(단위: 명)	2	2	1	2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단위: 회)	2	2	1	2	5

주: 회의횟수는 대법관 후보자별로 각 1회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와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추천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²⁾과 그동안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위원장(1명, 장관급)³⁾,

-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現 법원행정처장 대체)
 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괄호 안 생략)
 9.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후단 생략)
 - 2)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임위원(2명, 법관인 위원 1명 제외)⁴⁾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차량 임차료(3명, 법관인 위원 1명 포함), 비상임 외부위원(8명)⁵⁾의 회의참석수당을 합산하여 추계함

-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중 내부위원(법관 4명, 노동조합 1명)은 현직 신분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 중 법관이 아닌 위원 2명은 차관급 수준으로 보수와 차량을 지급하고, 상임위원 중 법관인 위원 1명의 경우 차량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67조의6⁶⁾에서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월 1.5회(연 1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3(위원장 및 상임위원) ③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관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
2.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전국법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법관 1명
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9.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1명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과 검사가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과 검사인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표 3] 사법행정위원회 회의횟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회)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법행정 위원회	전체회의	정기회의	12	12	12	12	12
		임시회의	6	6	6	6	6
		소계	18	18	18	18	18
	분과위원회		18	18	18	18	18
	합계		36	36	36	36	36

주: 분과위원회가 복수로 구성될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횟수를 합산하면 18회를 초과할 수 있으나, 상기의 분과위원회 회의횟수는 비상임 외부위원 1명당 연간 참석할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⁷⁾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판사회의(안 제9조의2), 전국법관대표회의(안 제9조의3), 사법정책자문위원회(안 제25조)와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윤리감사관 대체 감찰관 신설(안 제71조의2 및 제81조의13)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폐지: 재정지출의 감소 규모 미미
 -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 現 법원행정처 차장(판사이나 차관급 보수 수준) 이하 직원을 사법행정위원회가 승계하게 되므로, 인건비·기본 경비·사업비는 現 법원행정처 예산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윤리감사관 폐지·감찰관 신설: 재정지출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7)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소비자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안 제41조의2)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순증분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천위원회 구성횟수는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2026년 2회, 2027년 2회, 2028년 1회, 2029년 2회, 2030년 5회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만원, 2030년 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임기만료 대법관	2	2	1	2	5	—
	회의횟수	2	2	1	2	5	—
	위원 순증분	2	2	2	2	2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합계		1	1	1	1	4	8

주 1. 회의횟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별로 각 1회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9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7조의6)

1) 인건비(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의 인건비는 위원장(1명)과 상임위원(2명, 법관인 상임위원 제외)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2025년 기준 장관(국무위원)급 공무원과 차관급 공무원의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 장관(국무위원)과 차관급 공무원 연봉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장관(국무위원)	차관급
연봉	149,692	145,378
직급보조비	14,880	11,400
정액급식비	1,680	1,680
합계	166,252	158,458

자료: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사법행정위원회의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장 (1명)	보수	170	174	179	183	187	893
	기관부담금	22	23	24	24	25	118
	소계	192	197	203	207	212	1,011
상임위원 (2명)	보수	325	332	340	348	357	1,702
	기관부담금	42	44	45	46	48	225
	소계	367	376	385	394	405	1,927
합계		559	573	587	602	617	2,9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본경비(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 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7] 사법행정위원회의 기본경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액	위원장	170	174	179	183	187	893
	상임위원	325	332	340	348	357	1,702
	소계	495	506	519	531	544	2,595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32	33	34	34	35	1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 자산취득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수(3명, 법관인 상임위원 포함)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최초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사법행정위원회의 자산취득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원	위원장	1	-	-	-	-	-
	상임위원	3	-	-	-	-	-
	소계	4	-	-	-	-	-
자산취득비 단가		4.980	5.078	5.180	5.283	5.389	-
자산취득비		20	-	-	-	-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차량 임차료(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 차량 임차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수(3명, 법관인 상임위원 포함)에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9] 사법행정위원회의 차량 임차료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원	위원장	1	1	1	1	1	-
	상임위원	3	3	3	3	3	-
	소계	4	4	4	4	4	-
차량 임차료 단가		29.0	29.6	30.2	30.8	31.4	-
차량 임차료		116	118	121	123	126	6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회의참석수당(비상임 외부위원)

- 사법행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비상임 외부위원 수(8명)에 회의횟수와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또는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월 1.5회(연 1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사법행정위원회 비상임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사법행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체회의	외부위원	8	8	8	8	8	—
	회의횟수	18	18	18	18	18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소계	50	50	50	50	50	252
분과위원회	외부위원	8	8	8	8	8	—
	회의횟수	18	18	18	18	18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소계	50	50	50	50	50	252
합계		101	101	101	101	101	505

주 1. 회의횟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각각 월 1.5회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2,800만원, 2030년 8억 7,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법행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건비	559	573	587	602	617	2,938	—
	기본경비	32	33	34	34	35	168	—
	자산취득비	20	—	—	—	—	20	—
	차량 임차료	116	118	121	123	126	604	—
	회의참석수당	101	101	101	101	101	505	—
	합계	828	825	843	860	879	4,235	8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8억 2,900만원, 2030년 8억 8,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억 4,300만원(연평균 8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안 제41조의2)	1	1	1	1	4	8	2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67조의2 등)	828	825	843	860	879	4,235	847
합계	829	826	844	861	883	4,243	849

주: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등 대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비(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를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등 대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비(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를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